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994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훈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1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18. 선고 2022가소1170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72,7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C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로 중고화물차를 매수하면 그 차량을 처분하여 권리금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차량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가 2020. 5. 25.부터 2021. 10. 25.까지 D 주식회사에 납입한 위 대출할부금 합계 22,472,7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8. 경기안산단원경찰서장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전용수, 판사 박수미